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「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」이 고시(2012.06.21)되어 시행중에 있어, 관련 조례(2008.11.07 일부개정) 내용의 전부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제한에 필요한 근거규정(자치법규)을 마련하고자 하며,

○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존 가축 사육제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(안 제2조)

○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제한축종에 대한 사항(안 제3조)

○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1. 8. ~ 2018. 11. 28.)

○ 규제심사 : 심사 완료〔기획감사실-9679(2018. 11 .28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66995(2018. 12. 3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

○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, 소음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“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“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, 정의, 가축사육제한구역, 지형도면 고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